◉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-170호

2023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

2023년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명단 및 이의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1. 자격증 발급 대상자

- □ **대상**: 「수의사법」제16조의2 및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 대상자([붙임1])
 -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"알림소식" 메뉴 게시
 -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(www.vt-exam.or.kr)의 '공지사항' 메뉴 게시
 - * 합격자 대상 안내 문자 전송

2. 이의신청

- □ **이의신청 기간** : 2023. 4. 18.(화) 18:00 ~ 4. 23.(일) 18:00
 - * 이의신청 제출 기한 이후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
- □ 제출서류 : ①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 이의 신청서([붙임2])
 - ② 이의 증빙·참고 서류(필요 시)
- □ **제출방법** : 이메일(info@vt-exam.or.kr) 제출 * 수신여부 확인(☎031-702-8686)
- □ **결과통보** :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개별 통보(4.28.(금) 예정)

3. 유의사항

- □ (자격증 발급) 자격증 발급일은 동일하나 수령일은 지역별, 우편 사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 □ (이의신청) 이의신청자는 이의 내용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, 적절한 증빙·참고 자료를 기한 내('23. 4. 23. 18:00) 제출
- □ (기타문의)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(☎044-201-2655)